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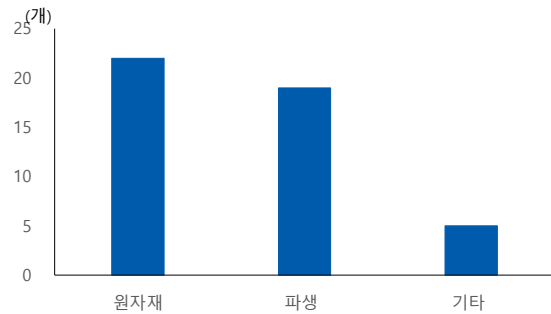


PTP 적용되는 종목, 올해안에 정리하세요

1. 2023년 1월부터 PTP 종목은 매도금액의 10% 과세

-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의 Section 1446(f) 개정안에 의거하여, 미국 이외 국적의 매수자는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형태의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의 세금 원천징수.
-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 PTP 종목의 세금 부과 결정.
- PTP 적용되는 종목은 향후 변동 가능.

PTP 적용 ETF는 원자재와 파생(레버리지, 인버스)상품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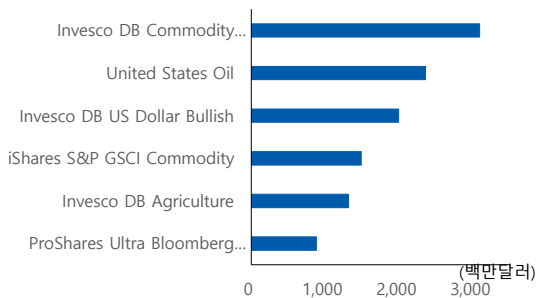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PTP 종목,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

- 올해 PTP 적용 종목은 원유, 통화, 원자재, 천연가스 등이 올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경우가 많음.
- PTP 종목의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음. PTP 적용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연내 매도 유리.
- 종목 교체를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추천.

PTP 적용되는 주요 ETF(펀드 규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2023년 1월부터 PTP 종목은 매도금액의 10%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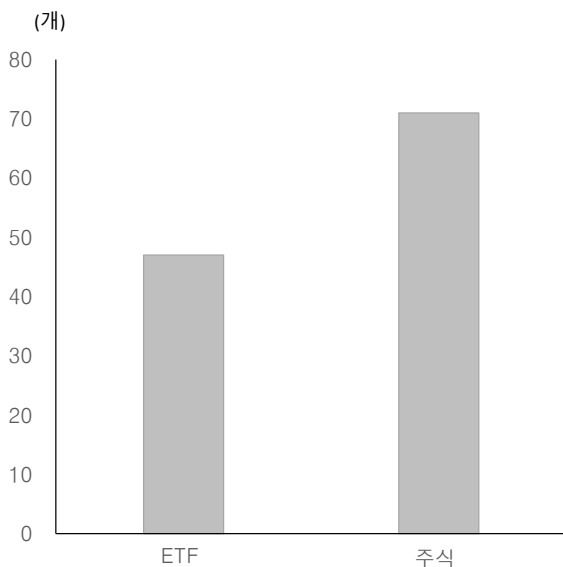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의 Section 1446(f) 개정안에 의거하여, 미국 이외 국적의 매수자는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형태의 종목을 매도할 때는 매도금액의 10%의 세금이 원청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 PTP 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관련 상품의 투자 규모는 약 1.6억달러(약 2,085억원)으로 추산된다.

PTP 종목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ETF와 유한책임회사(LP)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와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PTP 대상 상품은 향후 변동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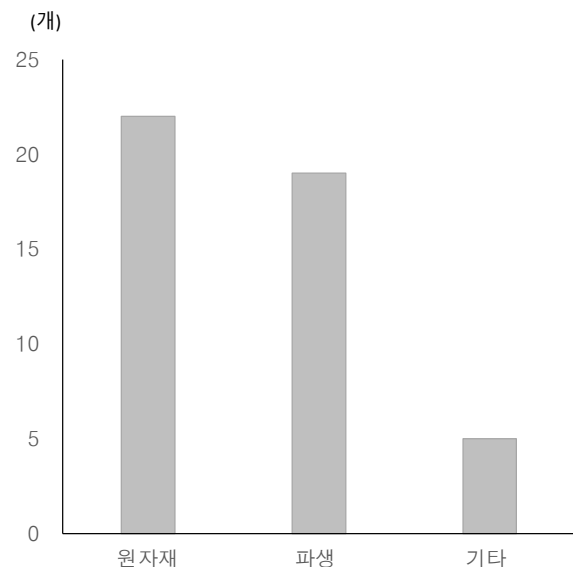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미국 PTP 대상 상품은 외국납구세액 공제나 필요경비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공제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세는 거주지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국이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차트1] PTP 과세 상품은 ETF와 주식



자료: Citiban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1월 1일

[차트2] PTP 적용 ETF는 원자재와 파생(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비중이 높음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PTP 종목,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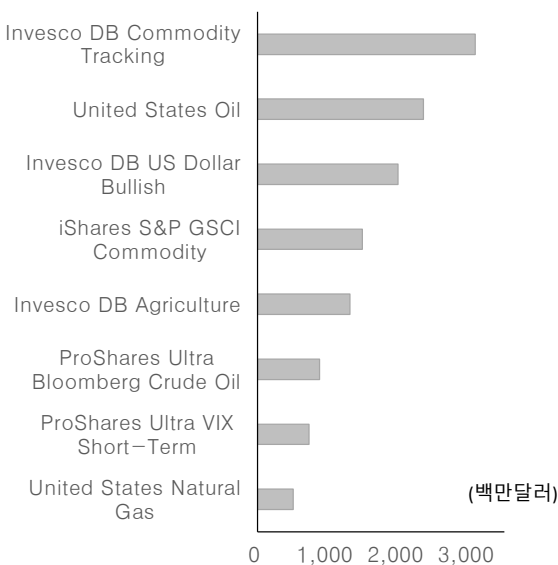
내년부터 PTP 종목은 매도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의 10%가 원청징수된다. 올해 PTP 적용 종목은 원유, 통화, 원자재, 천연가스 등 올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경우가 많다.

PTP가 적용되는 주식도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올해가 거래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PTP 종목의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PTP 적용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 금액의 10%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내 매도가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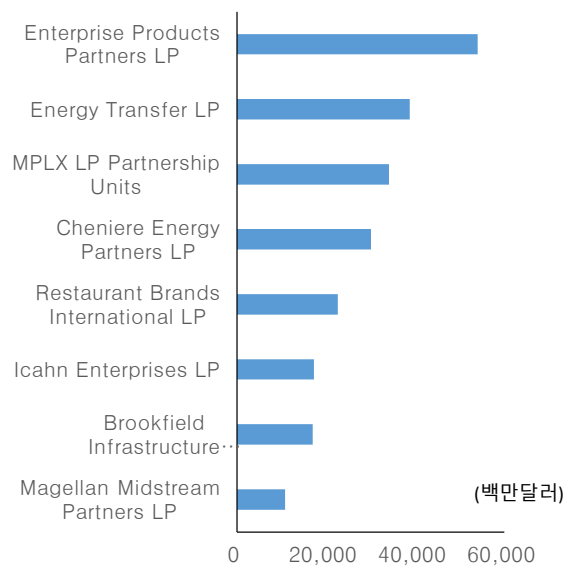
PTP 적용되는 상품은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해당 종목들은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내 매도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는 것도 유리한 결정일 수 있다.

[차트3] PTP 적용되는 주요 ETF(펀드 규모)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PTP 적용되는 주요 주식(시가총액)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